

의안번호	2216649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6.6.24.
추계번호	26B06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정부의 책무)(제1항 제9호 신설)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짐(제1항) 9. <u>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및 그 외 조치기준 마련과 사업주 지도 및 감독</u>	의무규정
2	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2항 제4호 신설)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제2항) 4. <u>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참여 및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u>	의무규정
3	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 의사,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촉하여야 함. 이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숫자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4항)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라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대피 권고 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의 노출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참여 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7.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8.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지도 9.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10.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제5항)	재량규정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6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7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절차와 제7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이때 종사자는 이 법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제4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 전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함. 이 경우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와 별도로 근무한 시간으로 봄(제5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이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함(제7항) 1. 종사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 2.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사업주는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함(제8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위험성평가 결과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9항) 1.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유해·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단계에서 누락한 경우 2.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사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있는 등 위험성 결정이 잘못된 경우 3.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4.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결과 및 주요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그 감소대책, 감소대책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의무규정
		제1항·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제10항)	의무규정
5	안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23조제6항, 제36조제1항·제2항·제5항,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1의2. 제36조제8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의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항) 3. 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의2. 제36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정부의 책무)(제1항제9호 신설)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2항제4호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미대상(제1항) – 개정안은 사업주가 시행하여야 하는 위험성 평가에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을 포함하는 내용임 – 다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현재 예산과 업무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2항~제4항) – 개정안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수급사업주의 종사자를 포함)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다만, 현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¹⁾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로 하여금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므로(법 제64조²⁾ 및 규칙 제79조제4호³⁾), 개정조항은 현행 지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현재 예산과 업무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5항~제9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70조(벌칙) 안 제175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⁴⁾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세 사유

□ (안 제23조)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를 재원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경비와 모니터링 등을 위한 예산(2026년 기준 1

-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5)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억 5,880만원)이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사업주의 의사, 업종,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임
 - － 개정안은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사업장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숫자와 유해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이 채용될 경우 인건비나 공사비의 변화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장래에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가 소관 사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추정하기 곤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인건비 및 공사비 등에 따른 재정 변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업종별·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

□ (안 제36조)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체인력이 채용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인 사업장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는 소관 사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와 규모, 채용 형태 및 임금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주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⁷⁾ 규정하는 내용임

6)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개정안에 따라 감독해야 할 부적절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유해·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단계에서 누락한 경우
2.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사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있는 등 위험성 결정이 잘못된 경우
3. 이 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감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4.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6.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해야하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 증원이 필요할 수 있음
- 다만, 감독관의 신규 채용 필요성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감독 방법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감독관의 정원은 고용노동부의 인력운용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감독관의 정원은 1,570명(중대재해수사 감독관 제외)으로, 2인 1조로 연간 50,000개(2026년 계획 물량)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2025년 기준 320만개 수준임

[표 1] 산재보험 사업장 수: 2021~2025년

(단위: 천개)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장 수	2,877	2,976	2,945	3,000	3,207

자료: 고용노동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7.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결과 및 주요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과 그 감소대책, 감소대책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공유하지 않은 경우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